

2005. 5.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5. 4	2005. 5. 7	2005. 5.10	2005. 5.12	기획감사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2005. 5.10	세정과장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 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	"	사회복지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신설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신축에 따른 공공 시설관리소의 신설과, 주민자치과의 상설기구화 등 충주시의 행정기구를 개편,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경제건설국에 배치(안 제6조제1항)
- 공공시설관리소 신설(안 제17조제7호)
- 지역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투자유치지원실의 여유기구 명시(안 제4조)
- 주민자치과를 정식기구로 전환(조례 제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증 개정조례안 부칙(제2조 삭제))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기구 증설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조정(안 제2조)
 - 중17명(1,261명⇒ 1,278(집행기관 17명 증, 1,259명))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 한시정원 명시(안 부칙 제2항)
 - 2006.12.31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1명

다.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문 조정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장애인자동차의 세액감면의 범위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정비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까지 일부 경감

2) 주요내용

- 장애인자동차 세액감면 범위 정비
 -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개정(안 제3조)
-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 건설임대 60~149m²와 매입임대 60~85m²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안 제11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3년간 1000분의 3'을 '3년간 1000분의 1.5'로 개정(안 제14조)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감면 조정
 - 농지 및 임야 '1000분의 1'을 '1000분의 0.7'
 - 대지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조정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27조의2)

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확인 및 공동주택가격확인 신청 발급수수료를 년도별 1호당 400원으로 함(안 별표1)

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3년 5월에 천연잔디로 조성된 삼탄잔디구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체력단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체육시설에 삼탄잔디구장 추가(안 제2조제1호)
- 삼탄잔디구장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전용료 및 이용료) 징수기준 신설(안 별표)

바.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1995. 1. 14일 동 조례가 제정되어 관리 · 운영되어 왔으나
- 도시화로 인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 한우가격불안정,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입식 희망자가 거의 없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전략하여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최근 신축된 다목적 체육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관리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정책(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신설되는 부서이며
- 공공시설관리소는 최근 호암지 주변에 집적화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호암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하는 기구로 앞으로 늘어나는 각종 복지관련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판단됨
- 투자유치지원실을 여유기구로 정한 것은,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편제되었다 하겠으며
-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주민자치과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므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겠음
- 다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소의 일원화 관리 등은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됨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공공시설관리소의 소요 인력을 충주시의 정원 내에서 증원 조정하는 내용임
-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는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소 등 행정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증加分 17명과 2006년까지 추진되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날로 번영하고 급장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하고 한시정원도 조례 부칙에 규정토록 하여 정원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충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정 비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 주된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임
-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7조의2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안의 경우 충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도시가스공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으로
-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를 시행중인 곳이 있으나 타 공공기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임

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임

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는 2003년 5월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조성된 삼탄 잔디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타 체육시설 사용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료화 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는 가금면 중원체육공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바.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본 조례는 1995년 1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한우 145두를 지원, 입식케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어 왔으나, 농촌의 고령화, 입식여건의 악화 등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새너할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필요성이 소멸된 현실에 비추어 제도적으로는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 현재,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에 의하여 입식중인 한우에 대하여 조례에 경과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에 본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없 음”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조정하는데 불이익은 없는가?

- 답변 :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불이익은 없음

다.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청주의 경우 도시가스가 오래전부터 공급되어 오고 있는데 한국도시가스공사에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

- 답변 : 청주의 경우 시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개정된 사항으로 청주의 경우에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없 음”

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없 음”

바.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질의 : 입식중인 한우가 있는데 폐지하면 입식중인 한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 답변 : 부칙에 경우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부칙은 수정하여 의결 부탁드립니다

5. 심사결과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감원(수정안 따로붙임)

다.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바.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부 결

※ 부결사유 : 입식중인 한우에 대한 조치 후 폐지

6. 붙 임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78명”을 “1,2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259명”을 “1,253명”으로 한다.

별표중 계란의 “1278”을 “1272”로, 일반직계란 “974”를 “969”로 7급란 “329”를 “328”로, 8급란 “230”을 “228”로, 9급란 “117”을 “115”로, 기능직계란 “242”를 “241”로, 기능9급란 “73”을 “72”로하고, 본청란의 계란 “537”을 “534”로, 일반직계란 “432”를 “429”로 7급란 “155”를 “154”로, 8급란 “106”을 “105”로, 9급란 “27”을 “26”으로 하며, 사업소란의 계란 “192”를 “189”로, 일반직계란 “114”를 “112”로 8급란 29를 28로, 9급 11을 10으로, 기능직계란 “75”를 “74”로 기능9급란 “20”을 “19”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278명</u> 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272명</u>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59명</u>							1. ----- : <u>1,253명</u>								
2.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직급별 직종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보 건 소	농업 기술 센 터	사업 소	읍면동	직급별 직종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기관 보 건 소	농업 기술 센 터	사업 소	읍면동
계	<u>1,278</u>	<u>537</u>	19	119	51	<u>192</u>	360	계	<u>1,272</u>	<u>534</u>	19	119	51	<u>189</u>	360
정무직계	1	1	0	0	0	0	0	정무직계	1	1	0	0	0	0	0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계	<u>974</u>	<u>432</u>	13	97	2	<u>114</u>	316	일반직계	<u>969</u>	<u>429</u>	13	97	2	<u>112</u>	316
3급	1	1						3급	1	1					
4급	7	4	1	1		1		4급	7	4	1	1		1	
5급	62	22	2	3		10	25	5급	62	22	2	3		10	25
6급	228	117	4	12		31	64	6급	228	117	4	12		31	64
7급	<u>329</u>	<u>155</u>	4	34	1	32	103	7급	<u>328</u>	<u>154</u>	4	34	1	32	103
8급	<u>230</u>	<u>106</u>	2	38		<u>29</u>	55	8급	<u>228</u>	<u>105</u>	2	38		<u>28</u>	55
9급	<u>117</u>	<u>27</u>		9	1	<u>11</u>	69	9급	<u>115</u>	<u>26</u>		9	1	<u>10</u>	69
별정직계	19	0	0	17	1	1	0	별정직계	19	0	0	17	1	1	0
5급상당	0							5급상당	0						
6급상당	17			17				6급상당	17					17	
7급상당	2				1	1		7급상당	2					1	1
7-8급상당	0							7-8급상당	0						
8급상당	0							8급상당	0						
연구직계	5	0	0	0	3	2	0	연구직계	5	0	0	3	2	0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4					2	2	연구사	4					2	2
지도직계	37	0	0	0	37	0	0	지도직계	37	0	0	37	0	0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34				34			지도사	34					34	
기능직계	<u>242</u>	104	6	5	8	<u>75</u>	44	기능직계	<u>241</u>	104	6	5	8	<u>74</u>	44
기능6급	7	4				3		기능6급	7	4				3	
기능7급	17	9				8		기능7급	17	9				8	
기능8급	40	15	3			21	1	기능8급	40	15	3			21	1
기능9급	<u>73</u>	36	3	4	5	<u>20</u>	5	기능9급	<u>72</u>	36	3	4	5	<u>19</u>	5
기능10급	105	40		1	3	23	38	기능10급	105	40		1	3	23	38